

원화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5. 7. 1.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40 조(변경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41조(해지 및 연장)</p> <p>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 ①항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</p> <p>제 42조(관할법원) ~ 제 43조(특약사항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1조(목적) ~ 제 40조(변경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41조(해지 및 연장)</p> <p><u>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“은행”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만료 도래 사실을 “이용기관”에 통지한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의 통지에는 “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, 해당기간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,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“이용기관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“연장을 원하지 않음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,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.</u></p> <p>제 42조(관할법원) ~ 제 43조(특약사항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	<p>금융감독원 약관 변경권고에 따른 내용 반영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

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영업점, 인터넷뱅킹 이용매체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고,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